

『控帳』의 竹島와 安龍福

권 오 엽*

(e-mail : kwonoyub@cnu.ac.kr)

目 次

- 1, 서문
 - 2, 『控帳』의 구성
 - 3, 안용복의 일본행적
 - 4, 죽도도해 鳥取藩
 5. 결론
-

1,서문

돗토리한(鳥取藩)의 가로가 작성한 『히카에초(控帳)』라는 기록이 있다. 『오야구라일기(御櫓日記)』, 『家老日記』라고도 하며 1655년(承應4)부터 1779(明治6)년까지의 기록을 전하는데, 鳥取縣立 박물관은 그 중에서 다케시마(죽도: 울릉도를 의미할 때는 죽도로 표기함)와 관계있다고 판단한 것을 초록 번각하여 공표했다. 난해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자료를 공유하려는 의지의 실천이다.

요나고(米子) 어민들이 죽도도해면허를 받았다는 1625년에서 30년이 지난 시기부터 기록한 것으로 米子の 오야(大屋)·무라카와(村川) 양가가 죽도에 도해하던 시기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¹⁾ 그 중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이 안용복을 납치한 시기의 기록이다. 관례적으로 죽도에 도해하던 米子 어민들이 죽도에서 조선인을 납치하여 처벌을 요구하자, 鳥取藩도 그 뜻에 따라 막부에 처벌을 요구한 내용이다. 이는 어민들이 죽도도해를 당연한 권리의 행사로 여기고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17세기에는 울릉도를 竹島 磯竹島 등으로도 호칭했다. 본고에서는 竹島로 표기한다.

鳥取藩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현재의 일본은 그것에서 영유의 정통성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控帳』를 살펴보면 鳥取藩의 죽도에 대한 영유의식이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控帳』의 조선에 관한 기록은 1666년부터 1716년까지의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데, 조선에 표류한 일본어민의 송환과 죽도와 관련된 조선인의 문제로 대별된다. 이것들은 죽도를 매개로 하는 기록임에도 鳥取藩의 죽도영유에 대한 유래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조선인의 납치가 영유문제로 발전되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부가 영유 여부를 물어도 부정한다.

鳥取藩의 영유의 부정은 조선인을 납치한 사실과 배치되는 의사 표시로, 그 이전의 죽도도해가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鳥取藩은 관례적으로 도해어민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었으나, 납치문제가 확대되자 자금대여도 불허하고 조선인과 조우하면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했다. 죽도도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鳥取藩과 무관하게 이루진 죽도도해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막부가 죽도도해의 유래를 물었을 때도 잘 알지 못하니 구니모토(國元)에 연락해서 답하겠다고며, 서둘러 조사하여, 죽도와 송도가 속지가 아니라고 답했다. 어민의 도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여도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응답이었다.

그럼에도 현재의 일본은 죽도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할 때는 鳥取藩의 어민이 도해했던 일을 증거로 든다. 『控帳』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조선인이 죽도에 도해하기 시작한 것을 1692(元祿 5)년으로 하고, 그 이전에 있었을 조선인의 도해를 부정한다.

『控帳』의 죽도기록은 간략하고 생략이 많으나 사건이 있었던 당대의 기록으로, 鳥取藩의 죽도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일본이 죽도의 역사적 정통성을 죽도도해에서 구하는 현실에서, 그것에 관여하고 기록했던 鳥取藩의 기록을 통해 鳥取藩의 죽도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의 조감은 타 기록을 이해하는 척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기록한 죽도의 의미도 알 수 있을 것이다.

2, 『控帳』의 구성

1666년 11월 20일에 시작하여 1716년 12월 24일로 끝을 맺는 抄錄은 조선의 허가 없이 죽도에서 어렵하고 귀선하다 강풍으로 부산에 표류한 사건을 시작

으로 해서, 1692년에 죽도에서 조선인들을 조우한 내용, 1693년에 조선인을 납치한 내용, 1696년에 안용복이 鳥取를 방문한 내용, 1716년에 1696년을 회고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연보

1666년(寬文6)

11월20일, 米子の 大屋甚吉船가 죽도에서 회선하다 부산에 표착했다 왜관을 거쳐 對馬에 송환되자, 江戸에 보고하는 사자가 大坂 御藏屋敷에서 鳥取에 飛脚을 보냈다.

12월13일, 표착에 대한 老中の 봉서를 받고 江戸에 파견할 사자를 정했다.

1667년(寬文7)

3월9일 大坂에서 송환해준 예로 大屋九右衛門이 藩主를 방문했다.

3월17일 이동에 소요된 경비를 鳥取藩이 大坂에 보냈다.

1692년(元祿5)

4월9일, 村川船이 죽도에 들어왔으나 조선인이 있어 귀항 했다. 米子の 家老가 보고서와 선두를 鳥取에 보냈다.

5월10일, 조선인이 죽도에서 돌아갔으면 무방하다고 老中 의 지시를 전하는 5월2일 飛脚이 도착했다. 13일에 米子에 전했다.

8월2일 어획이 없어 貸與金の 상환을 연기하기로 한다.

1693년

1월19일, 大谷家の 출선 준비, 村川家の 鐵砲 대여.

4월28일 조선인을 납치 귀항하여 米子城에 보고, 米子の 보고를 받은 鳥取藩은 7일 비각으로 江戸에 보고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大屋家に 두고 경비했다.

5월11일, 안용복의 동태 보고. 외출은 금하고 1일 3升의 술을 허가 했다. 大屋 藤兵衛의 호출하여 조사할 계획.

5월12일, 藤兵衛와 두 船頭에게 조선인을 납치한 사정을 묻기로 한다.

5월26일, 5월16일부의 長崎 이송령을 받고 회의. 사자와 의사의 선정. 육로 이송과 安龍福 호출의 결정. 소요경비 산정.

5월28일, 위험한 조선인에 대한 주의사항. 이송시의 경비.

5월29일, 이동 수칙 결정. 숙소로서의 會所. 아침에 米子를 출발한 안용복.

6월1일, 안용복과 박어둔이 大和宅에 1박하고 會所로 이동할 예정.

6월2일, 會所로 이동. 가신들의 大和宅 방문.

6월5일, 사신과 주의사항 등을 상담. 7일 출발 결정.

6월7일, 일행 長崎로 출발, 江戸藩邸에 보고. 죽도도해의 유래에 대한 답서. 御奉書, 對馬御狀의 사본·書付書附 2통을 江戸와 長崎에 보고.

7월18일, 6월 30일 長崎着. 7월 1일 對馬藩 留守居에 양도하고 鳥取藩에 보고.
 9월 19일, 사신들과 수행원의 위로.
 12월2일 大屋藤兵衛에 대부금 허가.
 1694년5월9일, 난풍으로 조업 포기.
 5월 19일 조업을 포기한 사유의 조사.
 11월26일 자금의 대출요구와 조선인과 대처방법 문의.
 1696년6월5일, 안용복 일행 赤崎 표착, 사자의 파견. 응급대응,
 6월12일, 志摩宅에서 대책회의
 6월14일, 靑谷에서 賀路의 東善寺로 이동. 4인이 수행.
 6월15일, 志摩宅에서 대책회의. 조선인 경비.
 7월16일, 조선인에 대한 봉서 도착, 각 지역에 연락.
 7월19일, 城主의 귀향과 가신들의 영접.
 7월22일, 조선인 경비담당자 임명.
 8월1일, 어민의 도해를 금제하는 봉서사본을 米子에 전달.
 8월6일, 조선인귀국. 江戸에 보고할 사자선정.
 8월19일, 對馬藩의 사자와 통사를 돌려보냄. 사례를 거절한 사자와 通詞.
 9월19일, 東善寺와 의사에 사례.
 11월23일, 村川家の 鹽問屋의 규정.
 1716년(正徳6), 의사 齋藤徳玄(徳元)의 후일담.

2) 어부의 표류

처음의 1666년조와 최후의 1716년조를 제외하면 1602년부터 1696년까지의 5년의 사건에 집중된 기록으로, 소위 「竹島一件」에 대한 기록이 전부다. 안용복의 납치를 계기로 조선과 일본이 죽도의 영유를 주장했던 시기의 기록임에도 생략이 많고 鳥取藩의 죽도에 대한 정통성을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다.

1666년과 1667년의 기록은 죽도에서 귀환하다 조선에 표착한 어민들이 송환되는 과정을 약술한 것으로, 송환의 내용과 경로의 약술이다. 같은 사건이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이하 拔書控)에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666년은 米子の 어민 大屋·村川家が 죽도에서 밀렵하고 있던 시기로, 大屋家の 경우는 米子の 大屋家を 開宗한 大屋勝宗의 후손 大屋勝實의 시대였다. 그런데도 1666년의 渡海船을 大屋勝宗船이나 大屋勝實船이 아닌 大屋甚吉船으로 하고 있다.

米子 灘町에 거주하며 廻船業을 가업으로 하는 大屋甚吉가 越後에서 귀범하다 죽도에 표류하자, 섬을 탐색한 후에 귀범하여, 당시 伯耆州의 代官으로 파견된 阿部四郎五郎에게 부탁하여 죽도도해면허를 받았다는 인물이다. 그 시기

를 1618(元和 4)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1625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大屋 甚吉는 면허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죽도에서 병사했으나 기일이 확실하지 않아 면허를 받은 5월 16일을 기일로 한다. 따라서 『控帳』가 1666년의 도해선을 이미 고인이 된 甚吉船으로 한 것에는 시일의 오기로 규명해야 하는 문제를 내포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3) 조선인의 납치와 도해

1692(元祿 5, 壬申年)년에 도해한 村川船은 죽도에서 전복을 채취하는 조선인을 보자 귀선하여 米子城에 보고했고, 그 보고를 받은 鳥取藩은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록은 1667년에 이은 기록이나 시간적으로는 25년 만의 기록으로, 죽도 기록의 시작이다. 『控帳』가 기록한 죽도에 대한 첫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그렇게 해석한다. 그것이 죽도에 대한 조선의 無緣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 같으나 기록이 없다는 것이 조선인의 도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693(元祿6, 癸酉)년은 안용복의 납치가 죽도영유문제로 발전한 해로, 보고를 받은 막부는 쓰시마한(對馬藩)에 조선인을 송환시키며 조선인의 죽도도해금지를 요구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자 對馬藩은 어렵문제를 영토문제로 왜곡시켰으나, 이전부터 양국 사이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조선은 어렵문제로 대응하다 영토문제로 발전되자, 역사 지리적 정통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對馬藩이 죽도탈취에 전력을 경주할 때 鳥取藩은 방관했다. 그런 사실을 반영한 결과인지 『控帳』에는 죽도에 대한 정통성이나 영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米子 어민의 죽도도해는 관례적인 것으로 1월에 준비하여 2월 초순에 출선하는데, 1692년의 村川家에 이어 1693년에는 大屋家가 武具까지 탑재하고 도해하여, 조선인을 만나자 납치했다. 보고를 받은 鳥取藩은 7일비각으로 江戸에 보고하고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이때부터 『控帳』은 「안비잔」으로 호칭하는 안용복 중심의 기록을 시작한다.

5월 26일에 나가사키(長崎)송환을 명받은 鳥取藩은 육로이동을 정하고 호송단을 조직하며 양도 절차도 논의했다. 태수를 대리하는 가신들이 상의하고 태수의 부(大殿様)에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²⁾ 송환령이 내린 이상 米子에서 長崎로 직송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조사할 필요가 없음에도 鳥取藩은 들을 불

2) 右之御使者之儀,江戸より御家老共存奇次第二可申渡旨, 志摩より申來候へ共, 大殿様御在國之儀故, 相談達御耳申付候事(『控帳』元祿6年5月26日)。

러 會所에 숙박시키고, 가신들이 방문하는 호의를 표했다. 이때 鳥取藩은 조선인 중에 난폭(狼籍)한 자가 있다며 경계를 강조했으나, 직접경험에 근거하는 판단이 아니었다.

鳥取에 6월1일 밤에 도착한 조선인을 6월 7일에 長崎로 출발시키고 江戸藩邸에 보고했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長崎 사신에게도 서류를 첨부시켰는데, 도해의 유래를 설명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鳥取藩과 막부가 도해의 사실적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과 조선인의 납치를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鳥取藩은 송환에 종사했던 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등의 성의를 표했다.

鳥取藩은 조선인의 송환을 명받은 후부터 태도를 달리하는데, 범죄자의 대우가 아니라 빈객의 대우였다. 대신 조선인을 납치했던 어민에 대한 태도는 크게 나빠졌다. 鳥取藩은 어민들에 대한 자금대여가 관례였다. 1692년에는 村川家の 어렵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수납을 연기해주었고, 1693년에도 大屋家에 대여했다. 그러나 1694년에는 商賣목적의 도해라며 대여를 거부했다. 대여는 『供帳』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拜借之義之ハ度々之義)」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관례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납치를 계기로 1693년에는 하지못하여 대여하더니, 1694년에는 거절했다. 조선인의 송환에 극진한 예를 표하는 대신에 米子 어민들에게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변화였다.

1696(元祿9, 丙子年)년은 죽도가 조선의 울릉도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 해로, 영유를 주장하던 막부가 1월 28일에 일본인의 죽도도해를 금하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도 『控帳』은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³⁾ 겨우 7개월이 지난 8월 1일에야 죽도도해를 금하는 봉서의 사본을 米子城主에게 전한 사실과 村川家에게 소금업을 허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속민이 생계를 잃는 일이었음에도 관심을 표하지 않을 정도로 죽도도해에 무관심한 鳥取藩이었다.

1696년에는 안용복 일행이 對馬藩의 비리를 소송한다며 방문했는데도 사건의 기록에 그칠 뿐, 조선인의 범법내용이나 죽도영유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6월 4일에 일행이 赤崎에 나타난 사실도 『控帳』는 6월 5일조에 기록했다. 보고받은 鳥取藩은 서둘러 일행을 靑屋의 傳念寺에 숙박시키고 平井金左衛門과 유학자 辻晩庵을 보내 도해목적 등을 물었으면서도 『控帳』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6월 12일에 가신들이 상의하여 6월 14일에 일행을 加路의 東善寺로 이 동시킨 사실도 약술에 그쳤다. 번주가 江戸藩邸에 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사건이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한 것이다.

『竹島考』와 『因府年表』에 의하면 일행 11인은 6월 21일에 鳥取藩이 준비

3) 江戸藩邸의 기록 『御用人日記』는 1월28일조에 기록했다.

한 傳馬 9필과 가마 2대에 분승하여 정회소로 옮겼다.⁴⁾ 『控帳』는 그런 내용도 생략하고, 7월 16일에야 이국선에 대한 봉서를 각지에 알렸다는 기록과 8월 6일에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갔다는 결과만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對馬藩이 파견한 조선어 통사를 돌려보낸 사실, 東善寺와 의사에 답례한 사실, 村川家에 소금도매업을 허가한 사실은 기록했다. 죽도도해금지를 양가의 문제로 한정시키고 그 사실과 경과를 기록하여, 죽도를 자번의 영유로 인식하고 기록한 것으로 여길만한 내용은 없다.

4) 생략이 많은 기록

죽도와 관련된 『控帳』의 기록은 7개년(1666, 1667, 1692, 1693, 1694, 1696)에 한정되는데 그것은 조선에 표류한 어민(1666, 1667년), 죽도에서 만남 조선인(1692년), 조선인의 납치와 송환(1693년), 관례적인 도해(1694년), 자진 도해한 안용복 일행의 송환(1696년), 조선인 송환에 관련된 사람들의 후일담(1716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안용복의 납치와 방문이 중심을 이루는 내용으로, 납치와 방문이 없었다면 기록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자번의 속민이 70여 년간 도해했고, 그들이 채취한 산물, 특히 전복은 「竹島串鮑」로 불리며 현상품으로 선호되어, 어민들만이 아니라 鳥取藩이 얻는 이익도 많았다. 그 죽도의 영유권에 막부와 對馬藩이 연연하고 있었음에도 鳥取藩은 아무런 관심도 표하지 않았고, 『控帳』은 그런 사고를 반영하여 죽도의 영유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控帳』의 죽도기사에서 안용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 그럼에도 그가 진술한 내용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납치하여 심문했을 것임에도 심문내용을 전하지 않고, 大屋家에 유폐했을 기간이나 長崎로 이송하는 도중의 행적도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된 것에도 생략과 결락이 많아 연속성이 없다. 1696년의 기록에는 赤崎와 靑屋를 거쳐 加路로 옮긴 6월 14일부터 조선으로 송환하는 8월 6일까지의 기록이 없다. 사건이 있었음에도 생략한 것이다. 기록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생략해서 좋다고 판단한 내용이라 생략했는지도 모른다.

속민들은 안용복을 납치하여 죽도의 배타적 독점권을 강화하려 했고, 막부도 그 뜻에 따르려 했으며, 對馬藩은 송환을 죽도를 탈취하려는 숙원을 이룰 수 있는 호기로 여기고, 어렵문제를 영토문제로 왜곡시키고 있었다. 이런 와중이었음에도 『控帳』는 그 문제에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납치한 조선인의 처벌을

4) 同廿一日傳馬九疋ヲ被遣、戶田市右衛門、牧野市朗右衛門、岡崎藤兵衛、途中ノ警護シ、異客ヲ本府町會所へ被差置、逗留中ノ馳走ヲ羽原伝五兵衛へ被命シ、然ル處ニ從幕府異客アラバ上陸致サセズ(『竹島考』朝鮮國通使舶于本藩)異客等ヲ鳥島へ御迎へニ相成、傳馬九疋ヲ遣サル<安同知·李進士兩人ハ乘輿ナリシニヤ>(『因府年表』元祿6年6月21日).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진술내용을 생략하고, 조선인을 납치하는 당위성이나 조선인의 범법을 거론하지도 않았다.

속민들이 죽도를 영지로 인식하고 그곳에서 조선인을 납치한 이상, 그 정당성을 주장했을 것임에도 『控帳』에는 그것을 인정하거나 조선인을 규탄하며 영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없다. 납치한 사실을 전하면서도 그 정통성을 인정하거나 주장하지 않는 것을 기록의 누락으로 보아야 할지 영유의식의 결여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나 『控帳』에 죽도의 영유를 주장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控帳』가 원칙을 세우고 그것에 맞지 않는 내용은 생략하고, 선택한 내용도 목적에 따라 윤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현상이다.

鳥取藩은 두 조선인을 송환할 때 가마에 태워 90명이 호위했으며, 안용복 일행 11인이 방문했을 때는 9필의 전마와 2대의 가마로 영접했는데도 기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안용복 일행이 鳥取藩을 방문한다고 隱岐代官所가 보고한 사실, 일행을 靑屋의 傳念寺에 두류시키고 필담한 사실, 湖山池의 靑島에 일행을 유폐시킨 원인과 과정 등도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에 원칙이 없었거나 목적에 따라 제외시킨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 같은 생략이 있는가 하면, 태수의 동정이나 안용복을 송환시킨 후일담의 기록이 있어, 죽도도해금지령이 전달되는 과정이나 鳥取藩의 조선인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추정할 수는 있다. 납치했던 조선인을 송환 하면서 보인 후대는 단순한 후대 이상으로, 납치한 사실에 대한 사과를 포함하는 후대, 후일을 기약하는 성의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鳥取藩이 안용복을 후대하여 송환한 후에 對馬藩은 죽도의 탈취를 위해 막부의 의도까지 왜곡하고 있었으나, 막부는 1696년 1월 28일에 일본인의 죽도도해를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對馬藩은 그 사실을 조선에 전하지 않으며 鳥取藩에 동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 시기에 안용복 일행이 다시 도일한 것이다. 그러자 鳥取藩은 이번에도 가마와 말을 내어 11인의 일행을 영접했다. 鳥取藩主는 그때까지 죽도도해금지령을 전하지 않다가, 7월 19일에 귀국하여 8월 1일에 「御奉書」의 사본을 大屋·村川 양가에 전했다.

1월 28일의 금지령이 8월 1일에야 현지에 전달되었다는 것은, 2월에 이루어지는 죽도도해가 1696년에도 예정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일본은 그 금지령을 근거로, 5월에 도해하는 안용복 일행이 도중의 울릉도와 子山島에서 왜인을 추방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허구로 단정하나 그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控帳』는 납치한 조선인이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狼籍)로 표기했으나,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과 이질적인 표현이다. 『控帳』의 그 어디에도 안용복과 박어둔을 「狼籍」으로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어, 납치의 정당성을 입

증해야 하는 米子 어민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안용복과 박어둔이 「狼籍」으로 판단할만한 행동을 했다면 鳥取藩이 빈객대우를 했을 까닭이 없다. 또 안용복과 박어둔도 大谷家와 달리 후대하는 鳥取藩에 난폭한 언행을 취했을 리 없다. 안용복이 후일에 비변사에서 鳥取藩의 후대를 對馬藩의 냉대와 비교 진술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죽도에 대한 영유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없는 대신, 조선인의 영접과 송환에 관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려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控帳』이다. 이는 죽도의 영유에는 무관심했으나 조선과 관련된 일에는 신중을 기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鳥取藩의 신중과 후의가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아직은 확인하지 못하나,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17세기 죽도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임에 틀림없다.

3, 안용복의 일본 행적

1) 납치와 환대

조선인을 납치했다는 보고를 받은 鳥取藩은 7일 비각으로 江戸藩邸에 알리고 두 조선인은 大屋家에 감금시켰다. 조선인들이 외출을 요구했으나 허가하지 않고 1일 3승의 술은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안용복을 「안비잔」이라 호칭하는데 박어둔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납치에 관련된 자들을 불러 진상을 파악했음에도 그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長崎 송환을 명받은 鳥取藩은 사신과 호송단을 선정하고 둘을 鳥取로 호출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선인 중에 난폭한 자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시를 했다. 5월 29일에 米子を 출발한 안용복과 박어둔이 6월 1일 밤에 도착하자 大和宅에 숙박시키고, 다음날에 가신 3인이 방문한 후에 숙소를 町會所로 옮겼다. 그곳에 머물다 7일에 출발하여 30일에 長崎에 도착하여, 7월 1일에 對馬藩 長崎留守居에 양도했다.

이 기록 역시 간략하여 두 조선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알 수 없다. 외출을 불허하고 1일 3승의 술을 허가했다는 내용, 난폭한 조선인이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여러 가지를 무리 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의 처사에 불만을 표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다.

그저 「여러 가지를 요구한다(色々わやく)」와 「난폭(狼籍)」하다는 표현만 보면 난폭한 조선인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납치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의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고 米子 어민들의 판단에 근거하는 단정만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두 조선인을 鳥取로 영접하고 가신들이 숙소를 방문한 것을 보면 조선인이 「狼籍」으로 표현할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96년의 방문은 6월5일에 赤崎에 착안하여 8월 6일에 귀국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60일 간이나 鳥取에 체류했으나 『控帳』가 전하는 행적은 간략하다. 일행 11인의 赤崎 표착은 『控帳』의 기록과 달리 6월 4일이었다. 赤崎에 착안한 일행은 靑谷의 傳念寺에 두류시켰다가 14일에 加路의 東善寺로 옮기고, 다시 鳥取城下로 옮겼다. 그럼에도 경호의 방법을 논했다는 15일의 기록을 끝으로 하고, 7월 16일에 봉서를 받았다는 기록과 8월 6일에 일행이 귀국했다는 기록으로 이어진다. 赤崎·靑谷·加路에서의 일행의 언동과 행적은 물론 湖山池에 유폐되었던 기간의 기록도 없다.

조선인의 도해를 금지시켜야 죽도전복의 상납을 계속할 수 있다며 조선인의 처벌을 요구했던 鳥取藩이 長崎로 송환할 때는 가마에 태우는 등의 호의를 표하더니 3년 후에 다시 방문하자 말과 가마를 내어 영접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와 행적은 기록하지 않았다. 일기 형식의 『控帳』가 이처럼 중대한 사건의 기록을 생략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마련이다.

2) 생략된 행적

『控帳』의 기록은 생략이 많으나 수 일 간의 일을 일괄하여 기록하기도 한다. 조선인을 납치하여 귀향했다는 4월 28일의 기록도 그렇다. 납치의 보고를 받은 일과 鳥取藩이 江戶藩邸에 보고하고, 사후처리를 지시한 사실 등을 같이 기록했다. 4월 28일에 7일 비각을 江戶에 보낸 것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다르다. 『御用人日記』 5월 9일조에 「조선인이 어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 두 사람을 배에 태워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왔다」라는 기록이 있고,⁵⁾ 13일 조에는 조선인의 長崎 송환을 명한 내용의 기록이 있다.⁶⁾ 7일 비각이 5월 9일에 도착했다는 것은 4월 28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냈다는 것이 된다. 『控帳』과 『御用人日記』 그 어느 쪽의 오류로 보아야 한다.

『控帳』의 기록을 근거로 일정을 정리하면 안용복의 江戶行은 불가능하다. 4월 28일에 大屋九右衛門의 집에 감금하고, 5월 11일에 조선인이 요청한 외출

5) 竹嶋江大屋右衛門・村川市兵衛舟、今歲渡海之節節、彼嶋ニ朝鮮人獵仕罷有付て、其内貳人舟乘罷歸候由申來(『御用人日記』元祿6年5月9日).

6) 先日御老中江御何被成候處、今日土屋相模守様より御家來壹人御差越被成様申越、吉田平馬罷出候。然處、彼唐人長崎江被遣、御奉行所江相渡(『御用人日記』元祿6年5月13日).

을 불허했으며, 5월 26일에 鳥取藩에 호출했다 6월7일에 長崎로 송치했다면 안용복이 江戸에 갔다고 인정할 만한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안용복의 江戸行은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나 『肅宗實錄』·『拔書控』·『伯耆志』 등이 안용복의 江戸行을 언급하고, 『增補珍事錄』 5월 4일조에는 加藤郷右衛門·尾關忠兵衛가 수호하여 鳥取藩에 갔다는 기록이, 『竹島紀事』에는 5월 1일에 鳥取에 갔다는 기록이 있어 『控帳』를 근거로 江戸行을 부정할 수는 없다.⁷⁾ 『控帳』가 당대 당사자들의 기록이라 하나 『拔書控』·『竹島紀事』·『肅宗實錄』 등 역시 당대 당사자들의 기록이라 『控帳』의 상황만을 근거로 江戸行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控帳』의 생략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국인을 납치하는 데는 그럴 만한 정통성과 목적이 있었기 마련임에도 『控帳』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죽도의 영유의식이나 조선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논리가 없고, 납치의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확인할 수 없다. 江戸藩邸가 막부에 보낸 보고서에 있는 내용 「향후 조선인을 그 섬에 조선인을 오지 못하게 하여, 전복도 전처럼 현상하고 싶다(向後彼島江朝鮮人不參候様致シ、鮑をも前之通獻上も仕度旨申達候處)」를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控帳』는 그것도 기록하지 않아,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정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물게 전하는 것이 조선인에게 「狼籍」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한 내용이다. 난폭을 의미하는 「狼籍」과 무리한 요구를 의미하는 「色々わやく」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 판단인지 알 수 없으나, 米子 어민의 의견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판단이라 할 수 없다. 납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米子 어민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長崎라면 米子에서 직송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鳥取로 호출하여 가신들이 방문하는 등의 예를 취한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그 이유나 조선인이 취한 행적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기록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있었음에도 생략한 결과이다. 생략이 많다는 것은 송환하는 과정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竹島紀事』나 『竹島考』 등이 가마에 태운 둘을 의사와 요리사를 포함하는 90인이 호위하고 「一汁七八采」의 성찬으로 대접한 사실을 전하고 있음에도 『控帳』는 그것도 생략했다.⁸⁾ 사실이 있음에도 생략했다 것은 필요에 따라

7) 御召奇ニ相成, 加藤郷右衛門·尾關忠兵衛等付添, 五月四日町會所ニ來リ(『增補珍事錄』元祿6年5月). 同廿八日ニ隱岐國出船仕五月朔日ニ取鳥罷着(『竹島紀事』元祿6年9月4日).

8) 일본인의 경우는 연회라 해도 「一汁三采」를 넘어서는 안 되었다. 왜관의 식사를 규정한 寛文11(1671)년의 『御壁書控』은 「朝鮮人參會の時各別. 日本人互に振舞の膳部、一汁三采、酒三色の上は、堅く無用たるべき事」라고 규정했다(田代和生『倭館』文藝春秋, 平成14년, P.177).

사건이나 사건의 내용을 결락시키거나 생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에 따른 생략은 1696년 기록에도 있다. 『元錄覺書』나 『竹島紀事』 등을 보면, 안용복은 對馬藩의 비리를 소송할 목적으로 도해했고, 隱岐의 代官所는 그것을 鳥取藩 등 요로에 보고했다. 鳥取藩 역시 그것에 근거하여 일행을 靑屋에 두류시키고 가신과 유학자를 파견하여 대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控帳』는 많은 부분을 생략했다. 더한 것은 東善寺로 이동시킨 것을 끝으로 50일간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다가 귀환시키는 8월 6일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일본에서의 행적을 종결시키는 기록의 방법이다. 『竹島考』·『因府年表』 등에 의하면 6월 21일에 町會所로 숙소를 옮겼으나 22일에 상륙시키지 말라는 막부의 명이 있어 일행을 湖山池에 유폐했다 하는데도 『控帳』는 그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다.

鳥取藩의 家臣들은 江戸에 체재하는 번주를 대리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보고하고 있었다. 안용복 일행이 赤崎에 표착했을 때도 가신들이 상의하여 靑屋·加路를 거쳐 町會所에 숙박시켰다. 그러다 상륙을 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湖山池 靑島에 유폐시킨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독자적으로 대처하다 번주의 지시가 달랐기 때문에 일행을 호수에 유폐시킨 셈이다. 이 같은 國元의 가신과 江戸의 번주, 막부와 번주와 가신들의 의견차이가 기록을 생략하게 한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國元과 江戸藩邸의 연락을 살펴보면 보면, 國元의 제1보가 6월 13일에 江戸에 도착하고, 제2보가 22일에 도착했다. 제2보를 받은 막부는 23일에 「조선인의 거처로 東善寺에 상륙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을 내렸고, 9) 藩邸는 6월 26일에 7일 비각을 보냈기 때문에, 일행이 靑屋 傳念寺에서 加路 東善寺와 城下 町會所로 이동한 것은 가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일행 11인이 적어도 7월 2일까지는 町會所를 숙소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행을 町會所에서 영접하다 호수에 40일 가까이 유폐시키는 일은 큰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만한 사정과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필요성을 원인으로 해서 사건의 기록이 생략되거나 결락된다는 것은 『控帳』가 목적에 따라 편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控帳』을 근거로 『竹島紀事』나 『肅宗實錄』 등이 전하는 내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9) 朝鮮人居所東千禪寺江上ヶ被置候事御無用候。早速御國江被仰遣、其儘船中ニ被置候様ニト之御事ニテ、御書付御渡候(『御用人日記』元祿9年6月22日)。

4, 죽도도해鳥取藩

1) 발견과도해

(1)大屋甚吉와 죽도도해

일본인의 죽도도해는 조선이 해금정책을 펴는 사이에, 어민이 幕臣과의 사적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독점권을 획득하고 이루어지는 일로 조선의 양해가 없는 밀렵이었다. 그러나 어민들은 70여 년간 도해하며 장군을 알현할 수 있을 정도의 번영을 이루자, 죽도가 조선령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그곳에서 조선인을 납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해를 금지당하여 가문이 쇠락하게 되었는데, 도해의 정통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1666년의 도해선이 진키치(甚吉)의 배라는 「大屋甚吉竹嶋江廻候船」이 그 좋은 근거이다. 원래 大屋甚吉는 越後에서 귀향하다 죽도에 표류하여 산물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귀향하여 米子城에 파견된 阿部四郎五郎와 村川市兵衛의 사적 관계를 이용하여 죽도에 도해할 수 있는 「면허」를 1618(元和 4)년에 받았다 한다. 그러나 大屋甚吉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죽도에서 병사했고, 命日을 알지 못하는 大屋家は 도해허가를 받았다는 5월 16일을 명일로 정했다. 大屋家は 면허를 1618년에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1625년설이 통설로, 甚吉은 1625년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사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666년의 도해선은 甚吉船일 수 없다. 당시 大屋家の 家督은 大屋勝實였다. 大屋甚吉의 이름은 죽도도해 허가서에,

伯耆國의 米子에서 죽도로, 선년부터 선박이 도향한 일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도해하고 싶다는 것을, 米子 町人 村川市兵衛와 大屋甚吉가 신청해 왔습니다. 그것을 장군이 들으시고 이의가 없다는 뜻의 명을 내리셨으니, 그 뜻을 알고, 도해의 건을 명하셔야 합니다. 삼가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10)

라고 村川市兵衛와 연명으로 기록했다. 양가의 도해를 금하는 1696년 1월 28일의 봉서에도

선년 松平新太郎가 因州와 伯州를 지배할 때, 신청한 伯州 米子の 町人 村川市兵衛와 大屋甚吉가 죽도에 도해하여 지금까지 어럽을 하고 있다 해도, 향후에는 죽도도해를 금지한다는 뜻을 명하셨습니다. 그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가 아뢰입니다.11)

10) 從伯耆國米子竹島江 先年船相渡之由候 然者如其今度致渡海度之段 米子町人村川市兵衛 大屋甚吉 申上付而 達上聞候之處 不可有異議之旨 被仰出候間 被得其意 渡海之儀可 被仰付候 恐々謹言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본문3).」

라고 村川市兵衛와 같이 연서했다. 이미 사거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도해금지를 명한 셈이다. 도해의 허가와 금지에는 70년의 차이가 있고, 도해 당사자가 바뀌었음에도, 동명으로 봉서를 발부한 것이다. 이는 죽도도해 허가가 양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막부의 공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현상이다. 종래는 大屋家の 기록에 의거하여 죽도도해를 1618(元和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노중들의 경력을 검토한 藤井讓治가 1624~5(寛永元,2)년으로 보았다.¹²⁾

또 도해면허의 문면과 어민들의 증언을 검토한 池内敏은 양가가 「이번에도 도해하고 싶다」라고 신청하여 「이후」가 아니라 「이번」의 도해를 허가 받은 사실과, 막부의 양해가 양가가 아닌 鳥取藩主를 상대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막부가 鳥取藩主에게 면허의 봉서를 발급하고 藩主가 양가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양가가 도해를 신청할 때마다, 또 번주가 교체될 때마다 갱신되고, 도해면허의 대상도 바뀌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637년에 조선에 표착한 村川船은 松平新太郎(池田光政) 앞으로 발행된 면허의 사본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번주는 池田光仲였다. 1666년에 표류했을 때도 일행은 「松平新太郎殿에게 보낸 서류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¹³⁾ 寛永初에 발행된 면허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

양가가 「도해면허」를 받은 이후 그것을 갱신하는 일 없이, 또 藩主가 교체될 때 갱신을 신청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양가는 처음에 받은 면허의 사본만을 소지하고 도해하다가 도해를 금지 당한 것이다. 이 면허를 근거로 川上健三은 죽도개발이 막부의 공인으로 본격화 된 것이라 했고,¹⁵⁾ 池内敏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했다.¹⁶⁾

『控帳』가 도해면허의 의미를 감안하며 1666년의 도해선을 大屋甚吉船으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甚吉가 승선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大谷·村川 양가는 사거한 선조들에게 발행된 봉서의 사본을 소지하고 도해하고 있었고, 鳥取藩은 그런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출어선이 소

11) 先年松平新太郎因州伯州領知之節、相窺之伯州米子之町人村川市兵衛・大屋甚吉、竹嶋江渡海至今今雖致漁候。向後竹嶋江渡海之義制禁可申付旨被仰出之候。可被存其趣候。恐々謹言(『御用人日記』元祿9년1월28일.)

12) 藤井讓治(『江戸幕府老中制形成過程の研究』校倉書房,1990),P18・326.

13) 御老中様より松平新太郎殿へ被遣候御狀之寫(國立國會圖書館所藏對馬藩宗家史料「分類紀事大綱」14, 寛文6년8월1일조(池内敏『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學出版會,2006, 제7장, 주11 재인용).

14) 池内敏『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學出版會,2006), P250.

15) 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古今書院,1966),P73.

16) 池内敏『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學出版會,2006),P251.

지한 면허의 내용도 인식하지 못하고 조세도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도해가 鳥取藩의 이익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鳥取藩이 죽도의 영유를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같이 의미한다. 그래서 鳥取藩主는 도해의 유래나 정통성을 알지 못했으며,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 『控帳』이기 때문에, 죽도의 영유나 도해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일 없이 사건을 선별하여 기록한 것이다

(2) 鳥取藩의 무관심

납치한 조선인의 처벌을 막부에 요구한 것은 죽도를 영유지로 여기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鳥取藩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선인의 범죄를 거론하는 방법으로 납치와 영유의 정통성을 입증하여 재발방지를 보장받으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控帳』에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없다. 어민의 보고에 입각하여 사건을 기록할 뿐, 납치의 정통성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조선인을 후대하며 죽도의 영유를 적극 부정하고 있다.

그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납치가 국제문제로 발전되자 鳥取藩은 죽도도해에 거리를 두려 한 것이다. 1692년에는 어렵이 불가능했다며 대여금의 수납을 연기해주고 1693년에도 대여해주었다. 관례처럼 보이는 대여였다. 그러데 1694년에는 태도를 달리 했다. 양가가 자금의 대여를 신청하며 죽도에서 조선인을 조우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묻자 鳥取藩은 도해가 商賣활동이라며 대여를 불허하고, 조선인과의 관계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알아서 하라는 답을 했다. 자금의 대여를 불허하고 조선인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형식으로 죽도도해에 거리를 두려 했던 것이다. 죽도의 영유를 의식했거나 의지가 있었다면 취할 수 없는 태도였다.

1692년부터 95년까지의 도해는 조선인과 난풍 때문에 어렵하지 못하고 귀항하여 소득 없이 종결된다. 그것은 양가는 물론 鳥取藩에게도 타격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控帳』에는 아쉬워하거나 대책을 강구했다는 기록이 없다. 기록과 다른 도해가 있었거나, 도해나 영유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죽도는 언제부터 양국에 부속되었는가」라는 막부의 질문에 「죽도는 因幡·伯耆의 부속이 아닙니다」, 「죽도·송도 그 외에도 양국에 부속하는 섬은 없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17)

1692년에 죽도에서 조선인을 만난 사실을 『控帳』은 「朝鮮之獵舟渡來」·「竹

17) 因州·伯州江村候竹嶋はいつの頃より兩國江附屬候哉。先祖領地被下候以前より之儀候哉(『竹嶋之書附』元祿申年二号)。竹嶋は因幡·伯耆附屬にては無御座候(중략)竹嶋·松嶋其外兩國江附屬之嶋無御座候事(『竹嶋之書附』元祿八年三号)。

島江朝鮮人參候儀」라고 기록했는데, 후일의 『鳥取藩史』는 『控帳』의 인용이라며 「村川·大屋의 渡海船은 米子を 출발하여 3월 26일에 죽도에 도착한다. 이 때 처음으로 동도에서 조선의 出漁者를 발견했다」¹⁸⁾라고 「처음(此時初めて)」이라는 표현을 삽입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조선인이 도해하지 않았으며, 조선의 해금정책을 방증으로 든다. 해금정책을 근거로 조선이 방기한 죽도를 大屋甚吉가 발견한 것으로 하고, 그것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구하는 것이다.

이 「처음」이라는 표현은 『控帳』이 아니라 『竹島考』의 표현이다. 『竹島考』는 특별히 「朝鮮人初渡來竹島」라는 장을 설치하고, 조선인을 조우하자 어럽을 포기하고 귀항한 사실을 설명했다. 조선인이 도해가 처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원래 『죽도고』는 도해금지에 분노하며 再渡海를 위해서는 조선이 분열되거나 전쟁이 발발해도 좋다고 말한 岡嶋正義의 편찬으로,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고가 편향된 자의 기록으로 신뢰할 수 없다.

2) 도해금지령과 鳥取藩

안용복이 자진 도해한 1696년은 일본이 일본인의 죽도도해를 금지시킨 해였다. 조선인의 도해금지를 요구했던 처음과는 달리 일본인의 도해를 금한 것이다. 그 후인 6월 4일에 안용복 일행이 赤崎에 표착했다. 그래서 안용복이 죽도와 송도에서 왜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여길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은 그것을 근거로 안용복의 진술을 부정한다. 그래서 금지령 이후의 일본인의 죽도도해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안용복은 물론 그의 진술을 전하는 조선기록의 신뢰를 가름하는 조건이다.

금지령은 막부가 鳥取藩의 죽도인식을 근거로 조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노중이 열좌한 가운데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취한 섬이라면 지금 새삼스럽게 돌려주기 어려우나 그러한 증거도 없으니, 이쪽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겠는가」라며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시키고 그 사실을 조선에 전할 것을 명했다. 그러자 對馬藩은 연말에 구두로 전하겠다고 하며 鳥取藩이 먼저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¹⁹⁾

江戸藩邸가 금지령을 통고 받았다는 사실은 『御用人日記』 1월 28일자에 전문이 기록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지에 전달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控帳』 7월 19일조에 「성주가 오늘 12시 넘어서 귀성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8월 1일조에 「大屋·村川の 향후 죽도도해를 금한다는 봉서의

18) 三月廿六竹島に着す。此時初めて同島に朝鮮の出漁者を發見す(『鳥取藩史』 제6권, P468).

19) 弥譯官江口上を以申渡候様ニ被仰付事ニ候ハ、(中略)秋末冬ニも及可申候、左候ハ、申渡候与之御案内延引可仕候(中略)伯耆守殿江申渡候儀者差急不申候共之儀与存候、当秋御參府願可被仰上哉之(『竹島紀事』 元祿九年1月28日)

사본을 荒尾修理에게 건넸다」라는 기록이 있어,²⁰⁾ 노중을 중개로 하는 對馬藩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對馬藩이 조선에 전달하기 전에 안용복 일행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지에 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금지령은 발부된 직후가 아니라 성주가 귀국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肅宗實錄』의

저는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래 우리나라의 경지인데 왜인이 어찌 감히 월경하여 침범하는가. 너희들을 모두 묶어 마땅하다고 말하며 뱃머리에 나아가 대갈하였습니다. 왜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래 송도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하러 왔다. 이제 마땅히 본고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송도는 곧 자산도로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 너희들이 감히 그곳에 산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였다. 21)

라고 5월 15, 16일에 울릉도와 자산도에서 만난 왜인을 꾸짖어 추방했다고 전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8월 1일에 금지령을 米子城에 전했다는 것은, 도해가 시작되는 2월 이후에 전달되었다는 것으로, 울릉도와 자산도에 도해한 일본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元錄覺書』는

안용복이 말하길, 죽도는 대가 [자라 무성한] 섬으로, 그래서 죽도라고 말한다.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의 관할 내에 울릉도라고 말하는 섬이 있다. 이것을 죽도라 한다. (중략) 송도는 우의 같은 도(강원도)에 자산이라는 섬이 있다. 이것을 송도라 한다. (중략) 5월 15일에 죽도를 출발하여 동일에는 송도에 도착했다. 다음 16일에 송도를 출발하여 18일 아침에 오키도의 니시무라 해안에 도착했다. 22)

라고 안용복이 울릉도와 자산도가 일본이 말하는 죽도와 송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섬에 들린 사실을 전하고 있다. 『숙종실록』이 울릉도에서 송도로 도해한 시기를 「이튿날 새벽(翌曉)」으로 한 것에 비해 『원록각서』는 5월 15일

20) 殿樣今日午下刻御歸城被遊候。御家中之面々、例之所江御迎ニ罷出候事(중략) 米子大屋・村川、向後竹嶋渡海之儀無用之旨、御奉書之寫、荒尾修理江相渡之事(『控帳』元祿9年7月19日,8月1日).

21) 渠倡言鬱陵島本我境倭人何敢越境侵犯汝等可共縛之仍進船頭大喝倭言吾等本住松島偶因漁採出來今當還往本所松島卽子山島此亦我國地汝敢住此耶(『肅宗實錄』22年9月25日).

22) 安龍福申候ハ竹嶋ヲ竹ノ嶋と申朝鮮國江原道東萊府ノ内ニ鬱陵嶋と申嶋(중략)松嶋ハ右同道之内子山ト申嶋御座候是ヲ松嶋と申由御座候是ヲ竹ノ嶋と申由申候(중략)五月十五日竹嶋出船同日松嶋江着同十六日松嶋ヲ出十八日之朝隱岐嶋之内西村之磯へ着(權五曄・大西俊輝註釋『元祿覺書』본문9,10,14, 제이엔씨, 2009).

에 죽도를 출발하여 동일에 송도에 도착하여 1박한 것으로 하는 차이는 있으나, 울릉도/죽도와 자산도/송도를 거쳐 隱岐島에 표착했다는 내용은 같다. 조선과 일본의 기록이 안용복의 양도 경험을 같이 확인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안용복 일행이 양도에서 왜인을 만났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川上健三은 도해금지령의 봉서가 江戸의 松平伯耆守에게 전달되어, 大谷·村川 양가를 비롯한 다른 어민도 죽도에 전연 출어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고 안용복의 진술을 허구로 단정했다.²³⁾ 田川孝三도 같은 주장이다.²⁴⁾ 그러면서도 번주가 8월 1일에 봉서사본을 전한 사실도 같이 소개했다. 이는 田川孝三가 對馬藩이 도해금지령의 전달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번주가 8월 1일에 현지에서 봉서사본을 전달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고도, 1월 28일 이후의 도해가 없는 것으로 단정했다는 것으로,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안용복을 부정해야 하는 목적에 급급한 것이다. 설령 도해금지령을 바로 현지에 전달했다 해도 2월 초에 출선하는 배가 출어한 후였을 가능성이 많아,²⁵⁾ 금지령이 발부된 일시를 근거로 도해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3) 안용복과 태수

번주가 7월 19일에 귀국했다는 것은, 안용복이 鳥取藩을 방문했을 당시 그곳에 없었다는 것으로, 안용복이 島主와 廳上에서 대좌하여 對馬藩의 비리를 소송했다는 진술은 허위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鳥取藩의 대응을 안용복이 그렇게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자신을 납치한 어민들이 보고하는 과정을 보고 또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최고 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신을 납치한 어민들이 호출 당하고, 자신들이 요구한 외출이 허가되지 않고 하루에 3승의 술이 허가되는 것 등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번주가 결정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鳥取藩은 서둘러 江戸에 보고하여 번주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안용복을 長崎로 송환하라는 명을 받아 사신을 선정하고 호송단을 구성하고 양도방법까지 계획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일부러 鳥取로 호출하여 가신들이 숙소를 방문하는 등의 호의를 표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주를 대리하는 가신들의 방문이었으므로 안용복은 그것을 도주의 뜻에 따른 방문으로 인식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인식해도 틀린 일이 아니다.

鳥取로 호출한 후부터 후대하기 시작한 것을 안용복이 번주의 뜻으로 보는

23) 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古今書院,1966년),P169.

24) 田川孝三「竹島領有關歴史的考察」(『東洋文庫書報』,동양문고, 1989),P31.

25) 拙稿「川上健三說의 虛實(一)」(『日本文化學報』第40輯,韓國日本文化學會, 2009,2),P313.

것은 당연한 일이다. 米子에서 鳥取로 이동할 때는 경호원과 의사가 수행하고 곳곳의 책임자들(庄屋·年寄)이 몸소 나와 만전을 기했고, 鳥取에서는 町會所에 숙박시키고 가신들이 찾아가는 등의 호의를 표했다. 그런 경험을 하며 안용복이 어떻게 판단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번주의 뜻과 달리 이루어지는 대우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인정한 번주의 뜻에 따른 변화라고 인식했기 마련이다. 또 숙소까지 가신들이 찾아간 상황에서 안용복이 번청을 방문하여 번주를 대신하는 가신과 대담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는 없다.

長崎로 이송하는 과정에 가마에 태우고 「一汁七八菜」를 대접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鳥取에 체재할 때의 후대는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 후대를 번주의 뜻으로 알고, 가신들과의 대면을 번주와의 대면으로 여기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에는 반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 수 있다. 또 그것이 납치의 상황을 전하는 효과적인 설명이었다.

1696년에는 더했다. 靑屋의 傳念寺에 두류할 때는 가신과 유학자가 번갈아 방문했고, 加路의 東善寺에서 町會所로 옮길 때는 9필의 전마와 2대의 가마로 영접하며 전담 접대자까지 선정했다.²⁶⁾ 그것을 『인부연표』는 「전마 9필을 보냈다. 안동지·이진사 양인은 가마에 태웠다」라고 11인을 예우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²⁷⁾ 이런 대접을 받는 데는 그 원인이 있었기 마련이다. 川上健三가 「일본 측이 사정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그들은 어중간한 지식을 악용 하여 허세를 부려」서 속은 것이라고 말한 대로가 아니라. 鳥取藩과 안용복이 공유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마련이다.²⁸⁾

정회소에서 영접한 이후의 기록은 없고, 일행을 湖山池 靑島에 유폐했다 8월 6일에 송환시켰다는 기록만이 있다. 湖山池의 유폐는 막부의 뜻을 알고 난 후의 조치로, 그 이전까지는 가신들이 자주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었다. 자주 결정이란 막부나 번주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연락하여 지시를 받는 사이에, 그 뜻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월 5일에 靑屋에 두류시켰던 일행을 12일에 東善寺, 21일에는 町會所로 옮기는 것과 같은 판단을 말한다.

그런데 國元가 6월 5일에 보낸 비각이 13일에 江戸藩邸를 통해 막부에 보고되었고, 제2보는 22일에 도착했다. 제2보에는 일행을 靑屋에 두류시킨 사실, 유

26) 同廿一日傳馬九疋ヲ被遣、戶田市右エ門、牧野市朗右エ門、岡崎藤兵衛、途中ノ警護シ、異客ヲ本府町會所へ被差置、逗留中ノ馳走ヲハシ羽原伝五兵衛へ被命シ(『竹島考』朝鮮國通使舶于本藩)

27) 十一人ノ異客等ヲ鳥府へ御迎へニ相成、傳馬九疋ヲ被遣サル(安同知·李進士兩人ハ乘ナリシニヤ)、戶田市右衛門·岡崎藤兵衛·牧野市朗右衛門、道路ヲ衛護シ、本町ノ町會所(其比二丁目ニ在)へ御差置ニ相成リ、裏判御吟味役羽原伝五兵衛へ逗留中馳走ヲ被命(『因府年表』元祿9年6月21日).

28)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古今書院,1966년),P173.

학자가 필담을 시도한 사실, 선중에 있는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12일과 21일의 이동은 번주의 지시를 받기 이전에 가신들이 판단하여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또 가신들은 결정사항을 태수의 부 大殿様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이처럼 태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실행하는 가신들이 안용복 일행을 영접한 이상, 가신의 대표와 안용복이 대면하는 기회가 있었을 수 있고, 그것을 안용복은 번주와 대좌한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대좌한 사람이 번주가 아닌 가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해도, 태수의 뜻을 대리하는 이상 태수와 대좌한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체제에 밝지 않은 조선인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것을 田川孝三은 「伯耆守와 대화했다는 이하의 부분은 모두 허위로, 그런 문답의 대화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귀국한 후, 접위관 兪集一의 취조에 공술하며 對馬의 제 조치에 화를 내며 심하게 讒說을 뱉은 것은 상술한 대로다. 그 언설과 이번 공술은 서로 통하는 곳이 많아, 과대하게 꾸며서 작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단정했다.³⁰⁾ 川上健三와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4) 표류민 대책

寬文6년(1666)에 조선에 표착한 大屋家 선원들은 조선의 배려로 송환된 내용이 『拔書控』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표류민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칸분 6년 丙午年에 죽도에 도해한 배가 조선국 부산의 먼바다에서 파선하였다. 그러나 선두와 사공 모두가 무사히 헤엄쳐 상륙했다. 그리고 조선국 곳곳에서 대접을 받으며 순조롭게 송환되어 귀국하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별기에 있어, 이 사건의 기록은 생략한다. 또 조선국왕이 선두와 수부에 준 전별목록이 2통 정도 있어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래에 기록합니다.

[제1통]

표류한 왜인의 처우로 별도로 내려준

왜인의 선두 1인에 백미를 각 2두, 백지를 각 1권.

기타 왜인 사공 21인에 백미 각 1두, 백지 각 1권

병오 9월일 순찰면

29) 内藤正中저, 權五曄·權靜역(『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2005),p143.

30) 田川孝三 전계서 P35,36.

[제2통]

표류한 왜인 22인에게, 백미를 14석 10두, 대구어를 110마리, 청주를 22병, 동과를 22 덩어리, 생선을 22속, 감장을 6승 6두를 이별에 즈음하여 보낸다.

병오 10월일³¹⁾

『控帳』의 사건과 같은 기록이나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그 개요와 송환 과정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국왕이 하사했다는 「전별목록」은 당시 조일 양국의 표류민 대책의 내용을 시사하며, 안용복이 江戸에서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는 진술과 대응한다. 1666년의 표류와 안용복이 납치·방문 후에 송환된 사건은 시대와 본질은 다르나 양국의 대응은 동질적이었다. 조선국왕의 「전별목록」은 『숙종실록』이 전하는 「관백의 서계」나 안용복이 탈취 당했다고 진술한 물품과 대응된다. 『拔書控』이 기록 한

조선인을 에도에 인도하여, 즉시 에도에서 조사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하사하여 돌아가게 했다.³²⁾

라는 내용은 안용복이 江戸에서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는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선인을 江戸에 인도하여, 즉시 江戸에서 조사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御贈」하여 돌아가게 했다는 내용은 『控帳』의 조선국왕의 「전별목록」이나 『숙종실록』의 「관백의 서계를 비롯하여 탈취 당한 물품」과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선국왕이 물품목록을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조선국왕이 직접 하사할 수 없음에도 조선국왕의 「전별목록」을 하사한 것으로 하고, 기재된 서면은 「조선국왕」이 아닌 「巡察面」으로 되어 있다. 「순찰면」의 분명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순찰의 임무를 맡은 직책이나 표류민의 송환을 책임질 수 있는 관리의 서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처럼 송환되는 표류민에게 조선국왕이 물품을 하사했다는 것은, 송환되는

31) 右勝實大寬文六年年 竹島渡海之船 朝鮮國釜山沖ニ而及破船 尤船頭水主共無恙陸江泳上則朝鮮國所々ニ而御馳走 順々ニ送歸シ相成事 具別有之略ス 尤朝鮮國王ヨリ船頭水主江餞別目錄二通有之 于今致所持則左書顯也。【第一通】漂倭處別贈。頭倭一人白米貳斗 白紙貳卷。從倭二十一名 白米各壹斗 白紙各壹卷·丙午九月日。巡察面。【第二通】漂倭二十二人白米拾肆石拾斗大口魚壹百拾尾 清酒貳拾貳瓶 東瓜貳拾貳塊 生鮮貳拾貳束 甘醬陸斗陸升際。丙午十月日。

32) 鳥府表御吟味之上唐人江府江御引渡則江戸表御穿鑿相濟順々御贈歸卜成(『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本文17).

안용복이 「관백의 서계」를 비롯한 제 물품을 받았다는 진술과 잘 대응한다. 이것은 당시의 조선과 일본이 표류민을 송환하며 물품을 「국왕」과 「관백」의 이름으로 하사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별기」를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깝다.

조선국왕이 전별목록을 하사하여 송환시켰다는 것은 『拔書控』의 「御贈」·「歸」와 대응하는 것으로 「御贈」이 조선국왕이 물품을 하사했다는 것과 대응하여, 관백이 안용복에게 「서계」를 「御贈」하여 송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치된 안용복은 江戸에서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령이라는 사실과 납치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관백이 그것을 인정하는 서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기록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조선이 국왕명의 전별목록을 하사했다는 『控帳』의 寬文 6년 기록은 관백이 조선인을 조사하고 순서에 따라 「御贈」하여 「돌아가게 했다」는 『拔書控』의 내용과 대응시키면 「江戸에 온 안용복을 심문하고 순서에 따라(조선국왕이 어민에게 전별목록을 주었듯이) 관백도 관백명의 물품과 서계를 주어 돌아가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控帳』의 죽도기록은 어민 중심이다. 조선에 표류된 어민이 송환된 1666년도 기사, 1692년에 죽도에서 조선인을 만나 어업을 포기하고 귀범한 기사, 1693년에 조선인을 납치했다 長崎를 통해 송환한 기사, 1696년에 방문한 안용복 일행을 영접했다 송환한 기사, 죽도도해금지를 명하는 봉서를 현지에 전한 기사, 송환업무에 종사한 자들을 위무한 기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鳥取藩은 죽도를 매개로 조선·막부·對馬藩과 교류하는데, 그것 역시 죽도에 도해한 어민을 매개로 한다. 어민이 표류했다 송환되거나 조선인을 납치하고 보고하여 지시 받는 것이 막부와 교류였고, 조선어 통사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도해한 조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對馬藩과의 교류였으며, 납치·방문한 조선인을 매개로 하는 것이 조선과의 교류였다. 막부와 달리 對馬藩이나 조선과는 안용복이 개재되지 않았으면 교류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

조선에 표류한 어민이 송환되었을 때는 사건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죽도에서 조선인을 조우하거나 납치했을 때는 江戸에 보고하여 지시 받고 있었다. 안용복이 납치당했을 때나 방문했을 때도 회의를 반복하며 처리 방법을 논의했으나 조선인의 위법을 지적하거나 죽도영유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는

일은 없다. 안용복의 위법이나 영유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자번에 나타난 안용복 일행을 영접하여 환대하는 일에 충실한 鳥取藩이었다.

환대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불명이나 송환에 관계한 사람들까지 위무하는 것을 보면 조선과의 관계에 신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長崎에 파견했던 사자를 봉서로 위로하고 의사 竹間玄碩을 비롯한 호송에 참여했던 자들도 위무했다. 1696년에 조선인을 치료한 의사에게 사례하고 관청에 그 사실을 통고했으며, 20년이 지난 1716년에 다시 상기할 정도로 관심을 표하고 있다. 그 같은 배려는 그들이 종사했던 일이 번에 있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으로, 그 일이 무사히 종료된 것에 대한 안심과 감사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죽도도해가 금지된 것을 아쉬워하는 내용은 없다. 죽도의 영유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실제로 鳥取藩은 죽도에 무관심했고 그것을 영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1693년 5월 22일에 막부가 江戸藩邸에 죽도영유에 대한 질문을 하자 「죽도는 멀리 떨어진 섬으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원래 伯耆守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大屋·村川 양가에 물어 다시 답했다.³³⁾ 조선인을 납치하여 처벌을 요구한 鳥取藩이, 죽도도해의 유래를 잘 알지 못하나 영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도해하는 어민에게 묻지 않으면 도해의 유래도 모를 정도였다.

그런 인식에 바탕해서 기록한 것이 『控帳』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도해를 허가했다는 「죽도도해면허」나 후손들의 도해를 금제한 「죽도도해금지서」도 기재하지 않았다. 납치문제가 양국의 죽도의 영유논쟁으로 발전되었을 때도, 鳥取藩은 그것에 무관심했다. 오히려 관례로 행해지던 자금의 대여도 불허하고 조선인에 대한 대처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죽도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으로, 영유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태도였다.

33) 竹島ははなれ場にて人住居は不仕候。尤、伯耆守支配所ニても無之候。右之通にて御座候(중략) 右之通國許江申遺、追て可申上候。已上(『御用人日記』元祿6年5月21日)。

【参考文献】

-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學出版會,2006,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古今書院,1966,
權五擘大西俊輝註釋 『元祿覺書』 본문9·10·14, 제이앤씨, 2009.
田代和生 『倭館』 文藝春秋, 平成14년.
内藤正中저, 權五擘·權靜역 『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2005.
『御用人日記』 鳥取藩政史料, 鳥取縣立博物館
『因府年表』 鳥取藩政史料, 鳥取縣立博物館
『竹島紀事』 島根縣竹島問題研究所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鳥取藩政史料, 鳥取縣立博物館
『竹嶋之書附』 鳥取藩政史料, 鳥取縣立博物館
『鳥取藩史』 對馬藩政史料
『肅宗實錄』
『竹島考』 鳥取藩政史料, 鳥取縣立博物館

要 旨

『控帳』의 竹島記錄は漁民中心である。朝鮮に漂流した漁民が無事に送還された内容、1692年に竹島にて朝鮮人を見つけ獵を諦めて歸帆した内容、1693年に朝鮮人を拉致して長崎経由で送還した内容、1696年に訪問した安龍福一行を歡待して歸帆させた内容、竹島への渡海を禁制する奉書を米子現地へ渡した内容、送還業務に當った者達を慰撫した内容などである。

朝鮮に漂流した漁民が送還された際には事件の内容と處理結果を記録し、竹島にて朝鮮人に會い、また拉致した時は事件を江戸に報告することに忠實であった。安龍福のことで會議を繰返し處理方法を論議したが、朝鮮人の違法性や竹島にたいする領有認識は表していない。安龍福の違法性を論じながら領有の正統性を主張するよりも、むしろ彼らを歡待する鳥取藩であった。

竹島領有を深刻に考慮して判斷すべき時もあったが、領有の正統性には言及していない。朝鮮人を長崎へ出發させた1693年6月7日に米子の漁民が竹島渡海の由來を幕府に報告したが、それは村川・大屋兩家に尋ねた返事であって、自藩の認識に基づいたものではなかった。竹島の領有を問う質問について兩家に尋ねて返事するということはそれを領有している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竹島を漁民の魚采地以上に見てい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

拉致した朝鮮人を送還した内容、訪問した安龍福一行を歡待した事實などを伝える『控帳』には竹島領有に對する正統性や領有しようという執念が窺える記録がない。領内の漁民が渡海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漁民の渡海を許可したという「渡海免許」やそれを禁じた「渡海禁制書」も紹介していない。拉致が兩國の領有問題に發展しても鳥取藩の正統性を表明した記録はなく、鳥取藩が竹島を領有地と認識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分かる。

鳥取藩は拉致が朝日兩國の問題に發展すると、慣例であった漁撈資金の貸与も商賣扱いして許可せず、島で朝鮮人に會った場合の對應法も明らかにしなかった。これは鳥取藩が竹島渡海問題から距離をおき、領有を意識していなかったからこそ取れる對應であった。

キーワード：安龍福 鳥取藩 家臣 江戸藩邸 竹島渡海 米子 拉致 送還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